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1년 4월 25일, 이의용·장호철 의원 등 30명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1년 5월 9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용	○ 제5조 내용 중 “10퍼센트 이내의”를 “10퍼센트 미만의”로 수정함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5월 일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4월 25일,

이의용 · 장호철 의원 등 30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4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11년 5월 9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의용 의원)

가.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사업시 발생하는 세대수 10% 범위내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3호와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 나.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19조 신설)

3. 검토보고의 요지 (도시환경전문위원 : 김준태)

-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시 발생하는 세대수 10% 범위내의 변경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서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공청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제19조를 신설함에 따라 재정비촉진 지구내의 세대수 10% 범위내의 변경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내용

○ 제5조 내용 중 “10퍼센트 이내의”를 “10퍼센트 미만의”로 수정함

※ 조례 수정안 ----- [별첨 1]

8. 첨부서류

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별첨 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1년 5월 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내용

- 제5조 내용 중 “10퍼센트 이내의”를 “10퍼센트 미만의”로 수정함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경미한 ① (생략) 1. ~ 2. (생략) < 신 설 > ② (생략) 1. ~ 2. (생략) < 신 설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경미한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 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 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경미한 ①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 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②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 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신 설 >	제1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 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19조를 제20조로 하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